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2
----------	-----

2019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4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다차원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교육·학예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협력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과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재원 조성, 용도, 관리 운용,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2조).

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672호로 발의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학예 분야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기금설립,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의 대북 관련 한반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교류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교류협력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장려하고 있고,¹⁾
- 서울시교육청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학생및학부모 동아리운영(8,000천원)’, ‘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3,000천원)’, ‘학생통일공감대 확산지원(19,000천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사업을 더욱 확대·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 추진” 등 3개 사업에 약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지원” 등 2개 사업에 1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통일부(2018). 문재인 의 한반도 정책.

[표-1] 2019년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추진 사업 내용 및 예산액

남북교육교류 추진 사업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본예산	추경(특별교부금)
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50,000	-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	190,000	-
남북교육교류협의체 운영	10,000	-
평화통일공감대확산지원 (교육분야 남북교류협력네트워크)	-	5,000
평화통일공감대확산지원 (교육분야 남북평화교류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10,000
합 계	250,000	15,000

○ 동 조례안은 국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한 남북교육교류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먼저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목적, 용어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협력체제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성,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구성과 체계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에 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8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여하여 북한 교육 당국에 상기 사업들을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북측으로부터 서울-평양 교육교류 사업을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10대 계획 사업

순	분야	사업명	주요 내용
1	역사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 답사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방문 • 서울-평양 교원을 위한 공동의 교육자료 제작·공유
2	전통문화	서울-평양 전통문화 공동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를 공동주제로 설정하여 학생체험캠프 운영
3	생태환경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교육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한반도의 생태·환경 체험교육 장소 상호방문
4	교원연구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방문 및 정보교류

5		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동연구주제 설정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6	교육 여행	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교육여행 추진단 구성
7	문화 예술	서울-평양 학생 예술 활동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학생 합동예술공연 및 공동관람
8	체육	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학생 스포츠 축제로 확대 방안 모색
9	과학	서울-평양 학생이 함께 하는 '과학 어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 연구회 운영을 통한 교수법 연구, 공유 및 '과학어울림' 활동 기획
10	직업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직업교육 대상 학생 개성공단 방문 및 교육과정 교류

출처: 서울시교육청(2019).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기본 계획.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시행과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미 계획된 남북교육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현행 법률상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협력사업마다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승인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²⁾,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 있어 통일부의 사전 승인요건이 맞는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3)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의견(안 제14조 ~ 안 제22조)

-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재원 조성,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교육 분야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로 2000년 초·중반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재 17개 시·도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교육 분야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이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확대되고,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 장려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남북교육교류’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현재는 8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그 중 일부 교육청은 이미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시·도 및 시·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 및 기금조성 여부

시·도	조례제정여부	기금조성여부	시·도교육청	조례제정여부	기금조성여부
서울시	○	○	서울시교육청	-	-
경기도	○	○	경기도교육청	○	○
인천시	○	○	인천시교육청	-	-
세종시	○	○	세종시교육청	-	-

대전시	○	○	대전시교육청	-	-
대구시	○	○	대구시교육청	-	-
부산시	○	○	부산시교육청	-	-
광주시	○	○	광주시교육청	○	○
울산시	○	○	울산시교육청	-	-
강원도	○	○	강원도교육청	○	○
경상북도	○	○	경상북도교육청	○	-
경상남도	○	○	경상남도교육청	○	-
전라북도	○	○	전라북도교육청	○	○
전라남도	○	○	전라남도교육청	○	-
충청북도	○	○	충청북도교육청	-	-
충청남도	○	○	충청남도교육청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

○ 이와 같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이 기존의 농업, 스포츠, 보건·의료 등의 분야를 넘어서 교육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발맞춰 이미 다양한 협력사업을 계획·수립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협력사업의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은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아직 기금의 규모나 재원의 출처, 연도별 기금조성 목표액 및 집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 및 남북정세의 변동 추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사례 등을 폭 넓게 검토하여 기금조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7330, 2019.06.0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

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 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제16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 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 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